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9. 26 선고 2023가단5960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(변경전 상호: B 주식회사)

소송대리인 C

피고D

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정범

변론 종결2023. 8. 29.

판결 선고2023. 9. 26.

주 문

1. E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2. 7. 1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E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2. 7. 20. 접수 제83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E에 대한 채권

- 1) 주식회사 F은 E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있었는데(이하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, 2002. 3. 30. 위 채권을 G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다. 위 유한회사는 이에 대하여 E을 피고로 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. 6. 29. 송달되었고 2005. 7. 14. 확정되었다(서울서부지방법원 2005. 4. 4.자 2005가소49758 이행권고결정, 이하 '이 사건 이행권고결정'이라 한다). 위 이행권고결정에 첨부된 소장에는 소장부분의 송달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양수도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.
- 2) G유한회사는 위 채권을 2009. 10. 6. H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(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. 6. 24.자 2011타채10668, 2012. 10. 26.자 2012타채13417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),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E에게 각 송달되었다.
- 3) H 주식회사는 2015. 2. 17.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. 이에 관하여 2017. 1. 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95936호로 E은 주식회사 I에게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있었고, 이는 2017. 2. 15. E에게 송달되어 2017. 3. 3. 확정되었다.
- 4) 주식회사 I은 2019. 2. 27.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 양도하였고, 그 양도통지가 2021. 1. 5. E에게 도달하였다.

나. E의 증여

- 1) E은 2022. 2. 25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상속받았는데, 2022. 7. 19.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2. 7. 20. 접수 제8362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 - 2) 위와 같은 증여 당시 E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.
-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권리

- 1)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는 E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

있고, 이는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.

2)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) 양도통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이에 대하여 채권의 양도통지가 없었으므로 채권의 양도사실을 E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장 및 압류명령의 송달 등을 통하여 양도통지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)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가) 한편,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채권이 양도일인 2001. 11. 28.2)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한 2006. 11. 28.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.

나) ①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 또는 실효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종료되어,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되고(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),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채권자의 추심신고에 따른 집행법원의 채무자 등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교부 시에 집행이 종료되며(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다54725 판결 참조), ③ 이와 같은 시효중단의 효력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게도 미친다(민법 제169조,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다7737 판결 등 참조).

다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G유한회사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2005. 4. 4.

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, H 주식회사가 E에 대하여 2011. 6. 24. 및 2012. 10. 26. 각 채권압류

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,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E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, 위

이행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, 위 각 채권압류 및

추심명령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시효소멸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, 위

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추심신고 등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압류가 해제

또는 실효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·입증이 없는 이상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

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(대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), 위

인정사실에 의하면, E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.

다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현진

별지

- 1) 원고는 청구취지에 "증여에 의한 상속계약"이라고 기재하였으나, 청구원인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증여계약임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.
- 2)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2. 3. 30. 양도된 것으로 보이나(갑 제4호증의 기재),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론의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.